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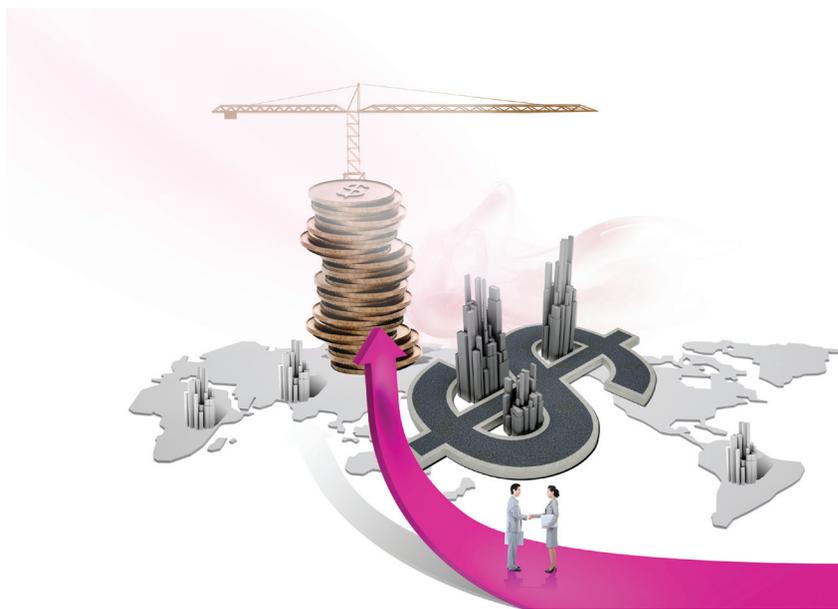
2012년도 적용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비율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는 2012년도 적용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2012년 7월 2일부터 적용합니다. 

▼ 2012년도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업종	부채비율	유동비율
기계설비공사업	127.53 %	130.88 %
가스시설시공업(1종)	175.11 %	129.88 %



제20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공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후원하는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오는 9월 21일에 개최됩니다. 이 대회는 건설기능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 및 기능 향상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서, 총 14개 직종에 대해 실시합니다. 입상자에게는 산업 연수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등 다양한 특전이 부여되오니, 건설 기능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회개요

- 날짜 : 2012. 9. 21 (금)
- 장소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609번지)
- 경기직종 및 인원 : 건축배관, 전기용접 등 14개 직종이며, 직종별 20명 내외

▣ 구비서류 및 참가 자격

- 참가신청서 교부기간 : 6. 11 ~ 8. 3
※ 직종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① 참가신청서(소정양식) - 1부
※ 건설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www.fcas.or.kr) 및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공개자료실) 참조
 - ② 주민등록증 사본 - 1부
 - ③ 이력서 - 1부
- 참가자격
 - 대회 개최일 현재 만14세 이상
 - 현장(또는 참가직종) 실무경력 1년 이상
 - 본 기능경기대회 해당 직종 입상 경력이 없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도 참가 가능

▣ 접수장소 및 문의처

- 대한설비건설협회 각 시·도회 사무처

▣ 시상내용

- 각 직종별 1위 : 200만원 및 국토해양부장관상
- 각 직종별 2위 : 100만원 및 대회장상
- 각 직종별 3위 : 70만원 및 대회장상

▣ 입상자 특전

- 각 직종 1·2·3위 입상자에게는 산업연수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직종의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 각 직종 1위 입상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해당 종목 본선 참가자격 부여
-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장려금 지급

▣ 입상자 발표

- 9월 25일자 건설경제신문 및 건설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참가 안내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실시하던 “안전보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개선하여 6월 1일부터 1,0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 우선 적용하고 2014년 12월 1일까지 모든 건설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교육을 미 실시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회원사의 숙지를 바랍니다.

- **제도시행** : 2012. 1. 26
- **건설현장 의무적용(20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로 단계적 적용)**

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 기준일	비고
1,000억원 이상	2012년 6월 1일	※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2012년12월 1일	
120억원이상~500억원미만	2013년 6월 1일	
20억원이상~120억원미만	2013년12월 1일	
3억원이상~20억원미만	2014년 6월 1일	
3억원 미만	2014년12월 1일	

- **교육실시기관** : 2012.1.26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교육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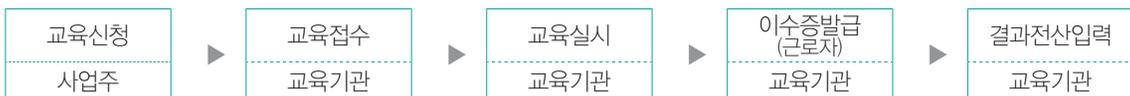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전자민원 → 건설안전사업신청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기관 “바로가기” 선택(별첨 참조)

- **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 원도급업체는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 **교육대상** :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 **교육내용 및 시간**

구 분	교육내용	시 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 교육을 미 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교육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제일건설안전기술(주)	서울 구로구 오류동	02,2636,5572	업무정지(8,2까지)
대한건설협회	서울 강남구 논현동	02,3485,8303	
(사)중앙안전보건협회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02,3666,9777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서울 종로구 돈의동	02,420,0106	
(사)한국건설안전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02,518,1501	
(재)건설산업교육원	서울 강남구 도곡동	02,575,7123	
한양안전교육원(주)	서울 동작구 대방동	02,769,1003	
세이프씨아이디(주)	서울 도봉구 쌍문동	02,814,8225	
(주)남부이에스	서울 동작구 상도1동	02,832,9945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 구로구 구로5동	02,860,4733	
(사)한국안전기술협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031,410,8504	
(주)안전하는사람들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왕2동	031,422,2918	업무정지(7,14까지)
KB건설안전연구원(주)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	031,8003,5630	
미래안전이엔씨(주)	경기 화성시 능동	031,8003,7082	
SP건설안전교육원(주)	경기 화성시 반송동	031,831,5599	
대한종합안전(주)	인천 남동구 만수동	032,465,7774	
제일건설안전기술(주)경기지부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032,611,6470	
중부종합안전(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032,654,9114	
(주)한국안전보건기술원	강원 원주시 태장2동	033,734,3902	
(사)대한산업안전협회(대전충남지회)	대전 유성구 용산동	042,628,2160	
(사)한국인재뱅크	부산 동구 범일2동	051,247,7012	
(주)한국안전기술지원단	부산 사하구 당리동	051,332,2114	
한국건설안전기술(주)	부산 수영구 수영로	051,759,3173	
(주)한국안전기술원	울산 중구 태화동	052,223,2128	
(주)포스코(글로벌안전센터)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054,220,5291	
(주)한국안전관리협회	전남 순천시 덕월동	061,721,2179	
(주)우리안전기술원	전남 순천시 조례동	061,742,1135	
(주)선안전기술공사	강원 삼척시 남양동	070,8764,8186	
(주)가설안전구조연구	경남 진주시 평거동	070,8868,6296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 Q** 건설 일용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A** 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의 여부는 위 규정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내용(근로기간, 근로형태, 임금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 A**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확정된 직후부터 작업현장에 배치하여 일을 하도록 하기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
-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되는 건설현장의 공사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대상 여부는 총공사금액(원도급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여기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관급, 사급)도 포함됩니다.
-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도급인(원청업체)과 수급인(하청업체) 중 누구인가요?
- A**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 도급인(원청업체)은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해야 합니다.
- Q**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도급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급인(원청업체)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 A** 도급인(원청업체)은 수급인(하청업체)인 사업주가 교육실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보유한 교육자료·교육장비를 제공(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 등에 대한 협의 포함)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Q** '12.6.1. 이전에 채용되어 6.1.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A**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6.1.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부터 실시합니다. 따라서 6.1. 이전에 채용되어 당해 현장에서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동 근로자가
- 가 6.1. 이후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Q** 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근로자가 소지한 이수증으로 확인 가능하며, 이수증을 휴대하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파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았던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09년~'11년(3년간) 중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도 현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A** '09년~'11년도에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재교육 또는 보수교육이 있나요?
- A**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재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도 다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Q**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정기교육이나 특별안전보건교육, 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 A**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교육 중 일용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씩 실시하던 '채용 시의 교육'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특별·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등은 기존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비용(수수료)은 얼마인가요?
- A** 교육비용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주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A**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나 업무수당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수당은 임금을 대체하는 용도로는 지급할 수 없음).